

창작자심리인권센터 규정

제정 2025.03.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창작자심리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상담 서비스”라 함은 심리상담, 진로지도 등을 포함하며,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2. “인권”이라 함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별·종교·국적·장애·사상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및 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3. “침해행위”라 함은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 등 제1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대학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학습, 연구, 대학생활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5. “성희롱”이라 함은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모욕감,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아니한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6. “성폭력”이라 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2차 피해”라 함은 당해 사건을 인지한 자가 사건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건 관련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기타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줌으로써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8. “사건관련자”라 함은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 등 당해 사건의 관련자를 말한다.
9. “신고인”이라 함은 침해행위를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10. “피해자”라 함은 침해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거나 침해행위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11. “피신고인”이라 함은 침해행위를 행한 것으로 지목되어 센터에 신고 된 사람 또는 신고이외의 경로로 침해행위의 혐의를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
12. “참고인”이라 함은 목격자 등 신고사건에 관하여 경험,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13. “사건 당사자”라 함은 피해자와 피신고인을 말한다.
14. “행위자”라 함은 피신고인 중에서 이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 그 침해행위의 혐의가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학칙 및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 한쪽만 해당되는 경우에도 적용하되, 사안에 따라 창작자심리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용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조(구성원의 의무) ① 본교 구성원은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해야 한다.

② 본교 구성원은 서로에 대하여 성별·종교·국적·장애·사상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③ 본교 구성원은 타인에 대하여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묵인하거나 부적절하게 개입하여 2차 피해를 유발해서도 아니된다.

제5조(조직) ① 본 센터는 센터장과 전임상담원, 객원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전임상담원은 상담관련 전공학과 석사학위 이상으로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단, 심리상담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와 그 밖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각각 지정해야 한다.

④ 객원상담원은 상담관련 전공학과 석사학위 이상으로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제6조(업무) 센터는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및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상담체계를 갖추고 학생에게 필요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대학 구성원(교직원, 학생)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심리인권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업무
2. 진로심리인권관련 프로그램 홍보 및 연구에 관한 업무
3. 진로심리인권관련 상담 및 검사에 관한 업무
4. 위기사례 대응 및 교육에 관한 업무

5. 교직원 상담역량 강화에 관한 업무
6. 폭력예방교육 및 성인지감수성교육에 관한 업무
7.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업무
8. 침해행위관련 상담, 사건 조사 및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9. 심리인권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센터 운영개선 및 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7조(학생상담 서비스 이용 학생의 권리 및 정보의 관리) ① 학생상담 서비스 이용 학생은 비밀유지를 기대할 권리, 상담 참여 여부를 선택할 권리, 자신의 사례기록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 상담계획에 참여할 권리, 어떤 서비스는 거절할 권리 그리고 그런 거절에 따른 결과에 대한 조언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학생상담 서비스 이용 학생은 사생활과 비밀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이용 학생 및 주변 인물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학생의 동의 없이도 이용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전문인이나 관련 기관에 알릴 수 있다.

③ 상담과 관련된 제반 기록은 센터의 전문 기록으로서 5년 동안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후에는 파기한다.

제2장 사건조사 및 구제

제8조(사건의 신고와 접수) ①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신고인,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및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 또는 제3자가 신고할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센터장 또는 센터장의 위임을 받은 상담원은 인권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에 사건 관련자를 소환하여 사건의 진위여부 및 사건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인권심의위원회 회부를 원하지 않고, 조정을 요청할 경우, 센터장 또는 센터장의 위임을 받은 상담원은 일차적으로 조정을 위한 작업을 할 수 있다.

⑥ 센터장은 사안에 따라 사건조사팀에 외부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⑦ 센터는 조정을 통해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제9조(직권조사) 센터가 제8조 제1항 외의 다른 경로로 침해행위를 인지한 경우,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사건관련자 보호의 원칙과 권리보장) ① 사건 당사자는 사건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대

리인(당사자가 그의 권리를 대리하도록 선임한 자연인 또는 단체)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② 피해자는 피해사실 및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및 조치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신고사건의 조사와 처리) ① 센터는 사건이 접수되면 조사를 위하여 피신고인에게 조사개시를 고지하고 조사 및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신고 당시 또는 신고 이후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사건의 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사건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신고의 처리 결과를 사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 방법) ① 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진술서는 14일 이내 제출하여야함)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정보 또는 의견 요청

제13조(조사 종결)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을 조사종결할 수 있다.

1. 센터의 조사권한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경우

2. 사건의 당사자가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3. 조사개시 후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의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거나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조사개시 후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다만,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조사종결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신고의 철회) 신고인은 사건의 인권심의위원회 처리 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제15조(신고의 각하)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1. 제3자가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피신고인이 특정될 수 없는 경우
 3.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신고를 철회한 후 동일한 사안을 다시 신고한 경우
 5. 인권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신고 등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 ② 센터장은 신고가 각하된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신고의 기각) ① 인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 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센터장은 신고가 기각된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조정) ① 센터장은 사건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양 사건당사자에게 적절한 피해 구제방안(이하 “조정안”이라고 한다)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사건당사자 모두 조정안에 동의한 경우에는 조정안에 따른 피해회복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건조사 및 처리절차가 종결된다.

④ 센터는 조정을 통하여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접수하지 않는다.

⑤ 조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조치) ① 센터장은 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사건 당사자의 분리조치와 접근 및 연락금지 명령
2. 피신고인의 재발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
3. 피신고인의 교내시설 및 서비스 이용 제한 명령

4. 사회봉사 프로그램 이수명령
 5. 그밖에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치
- ② 센터장은 사건처리 종결 이전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징계의 요구) ① 센터장은 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를 요청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판단과 징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 기구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② 피신고인이 본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기관에 사건에 대한 조사, 징계 또는 기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가중조치 및 가중징계) 피신고인이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장은 인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중조치 하거나 해당 징계기관에 가중한 징계 또는 별도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피신고인이 재범일 경우
2. 피신고인이 인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센터의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3. 피신고인이 신고인, 피해자, 대리인 및 참고인 등에게 보복을 하거나 보복의 위협을 한 경우
4.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대리인 또는 주변인 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종용한 경우

제21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하거나 절차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2조(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건의 처리를 위한 업무수행에서 제척된다.

1. 당해 사건의 당사자
2.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람

제23조(기피) ① 당사자는 사건의 처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22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② 센터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회피) 사건의 처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제2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제25조(비밀유지의무)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은 사건관련자의 동의 없이는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소송 사건에서 권리구제를 위해 자료제공이 필요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6조(기록 및 자료의 비공개) 사건기록 및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법원의 명령에 따르는 경우, 관련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본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본교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건기록 및 자료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공개될 수 있다.

제27조(기타) 센터의 상담, 조사, 구제,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관계부서의 협력의무) 학내 관계부서는 센터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9조(교육 훈련의 지원 등) 센터는 직원이 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3장 인권심의위원회

제30조(목적 및 구성) 인권침해행위의 조사 및 처리,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인권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1조(구성) ① 인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센터장이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안의 성격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단, 학생 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교직원
2. 학생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또는 법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4.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촉된 위원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건의 조사가 종결되는 때 만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장은 위원의 일부에 대하여 1년 이내의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센터장은 심의위원회에 결원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제32조(활동)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사건의 조사와 처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권과 성희롱·성폭력 사안과 관련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3조(재심의) ① 심의위원회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건 당사자는 이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이는 사건 당사자가 1회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③ 재심이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시한다.

1. 조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 조사과정 중 검토하지 못한 중요한 사실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

④ 센터장은 재조사 청구가 있는 경우 재조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34조(비밀유지) 심의위원회 업무에 관계한 교직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제4장 심리인권센터운영위원회

제35조(목적 및 구성) 센터의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심리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6조(구성 및 활동) ① 심리인권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속 부서장 및 각 스쿨 학생담당 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논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운영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